



제410회 국회 (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용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3589호)
- 이형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3590호)
- 하태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4002호)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4173호)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4189호)
- 최기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4715호)

2023.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박규찬

목 차

I . 개 요	1
【김용판의원안】	1
【이형석의원안】	3
【하태경의원안】	4
【구자근의원안】	6
【한정애의원안】	8
【최기상의원안】	9
II . 검토의견	11
1.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지정 등(김용판의원안)	11
2. 안전문화활동 범위 및 주체 확대(이형석의원안)	16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수집 정보 연계·활용(하태경의원안)	18
4. 국고보조 등 지원 대상에 도시가스요금 포함(구자근의원안)	22
5. 재난 예보·경보·통지 시 반려동물 동반 관련 대피장소 정보 제공 (한정애의원안)	25
6. 집행계획 등의 추진실적 제출 등(최기상의원안)	28

I. 개 요

【 김용판의원안 】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용판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3. 8. 1.
3. 회부연월일 : 2023. 8.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의 가속화,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초연결사회의 대두 등 재난환경의 변화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형태와 양상의 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대비하기 위한 재난안전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지역 중심의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서 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시·도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나, 전국 15개 시·도 연구원 중 10개 연구원에서만 재난안전 전담부서를 운영 중이며, 전담부서 중 일부는 한시조직으로 관리되거나 출연금이나 보조금 없이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할 여건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시·도 연구원의 재난안전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장이 지역에 “재난안전 연구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안전 연구센터”의 역할을 규정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이형석의원안】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형석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3. 8. 1.
3. 회부연월일 : 2023. 8.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등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으로 각종 사고의 위험요인을 찾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 등이 사고의 징후 등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활동으로써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을 장려·지원하도록 하고, 안전문화활동의 참여 주체를 주민뿐만 아니라 기관·단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4).

【 하태경의원안 】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하태경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3. 8. 24.
3. 회부연월일 : 2023. 8. 2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주민의 안전 등을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의 영상정보는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등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관계기관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어 국민의 안녕을 위해 국가기관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이태원 사고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영상정보를 즉각 활용할 수 없던 국가기관은 신속히 상황파악을 하지 못했음. 기초·광역단체의 CCTV가 국가 관계기관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라면 안타까운 인명사고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의 국가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CCTV를 연계하여 국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 구자근의원안 】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3. 9. 1.
3. 회부연월일 : 2023. 9.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 대상 항목에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은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주민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가스요금은 누락되어 있어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주민이 직접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해야하는 실정임.

이에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발생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 도시가스요금을 추가함으로써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계 안정 및 회복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6호).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41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한정애의원안】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정애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3. 9. 4.
3. 회부연월일 : 2023. 9. 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문자 송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문자에 구체적인 대피 가능 장소에 대한 안내가 없어 실제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고,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소가 거의 없어 이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관련 안내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대피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함.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하는 경우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피장소는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장소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최기상의원안】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최기상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3. 9. 26.
3. 회부연월일 : 2023. 9.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별로 작성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 한 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해당 계획을 토대로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계획의 작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추진실적의 제출·분석 등 사후관리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어렵고, 계획 작성 주기의 경우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계획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의 작성주체는 매년 해당 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의 작성주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II. 검토의견

1.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지정 등(김용판의원안)

김용판의원안은 지역별 재난안전관리 관련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에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안전연구센터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김용판의원안
<u><신 설></u>	<u>제71조의3(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립)</u>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련한 정책과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지원 2. 제10조의4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지원

현행	김용판의원안
	3.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 관리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 관리 관련 정책 수립 자문·지원 5. 그 밖에 지역의 재난 및 안전 관리체계의 확립 및 지역 사회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신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연구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연구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

도록 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한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연구원법”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보조하고 연구를 주로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함)의 설립·지원 및 육성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개발은 동 법에 따른 연구원이 주로 수행하고 있음.²⁾

-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중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그 총괄기관에게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개발된 기술의 보급·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와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등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각 시·도 지방연구원 15개³⁾ 중 재난안전 전담부서를 설치한 연구원은 10군데이고, 그 중 일부는 한시 조직으로 관리되거나 출연금·보조금 없이 자체 예산만으로 운영되고 있음.

[지방연구원 재난안전 연구부서 설치·운영 현황]

구분	지방자치단체	지방연구원	부서명(신설연도)
전담 (10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12)
	대구광역시	대구정책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23)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16)
	울산광역시	울산발전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19) *자체 예산으로 운영
	충청북도	충북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15)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15)
	경상남도	경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21) *3개년 운영협약('21~'23)
	경상북도	경북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17)
	인천광역시	인천연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22)
	부산광역시	부산연구원	시민안전연구센터('23)
비전담 (5개)	경기도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등
	강원도	강원연구원	사회환경연구실 등
	전라북도	전북연구원	지역개발연구부 등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광주전남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환경도시연구부 등

자료: 행정안전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3) 대전시·세종시와 전라도·광주시는 공동으로 출연함.

개정안은 지방연구원의 여건상 안정적으로 재난안전 관련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지역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지정 및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입법 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지방연구원법에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고도 적정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기획재정부 등 재정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안전문화활동 범위 및 주체 확대(이형석의원안)

이형석의원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여야 하는 안전문화활동에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지원을 추가하고, 기관·단체가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현 행	이형석의원안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u>2의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지원</u>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u>주민이</u>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 ----- <u>주민과 기관·단체가 참여</u>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안전교육·훈련, 캠페인·홍보,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관련 통계 현황 관리와 각종 조사·분석 등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⁴⁾

개정안은 안전문화활동의 종류에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지원을 추가하고 주민 외에 기관·단체도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 참여 주체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적극적인 안전신고를 유도하여 각종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신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수집 정보 연계·활용(하태경의원안)

하태경의원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재난관리업무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하태경의원안
제74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74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 ① ----- ----- ----- ----- ----- ----- ----- ----- -----, 이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

현 행	하태경의원안
	<u>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

현행법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연계 운영 및 표준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⁵⁾

이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업무수행을 종합적·

5) 제74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축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연계 운영되거나 표준화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재난대응기관 간 재난 현장 상황의 실시간 공유를 통하여 공동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이 구축되어 현재 운영 중임.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예방·질서유지 및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수집 정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부처나 긴급구조기관 등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바, 특히 이태원 참사 당시 중앙대책본부 및 긴급구조기관 등이 해당 정보를 즉시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피해가 더욱 컸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은 국가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CCTV 영상정보를 연계하여 재난관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난관리업무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입법 취지가 타당함.

다만, ①임의규정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 조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수집 정보를 연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안 제74조제1항 후단 신설)은 법체계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②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여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정보의 연계·활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안 제74조제4항 신설)은 현행 제74조제1항에 따라 이미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이 구축·운영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한편,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상황파악 및 대응 등의 재난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상 범죄 예방·수사, 시설안전·화재 예방 용도로 사용되는 CCTV 영상정보의 연계 및 활용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긴급 구조지원기관에는 정보보안체계 및 정보통신망이 상이하여 공공기관과 연계가 어려운 민간기관이 포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⁶⁾ 관계기관 간의 CCTV 연계 사항을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1.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및 기상청
2. 국방부장관이 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 4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전자
5.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6.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7.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4. 국고보조 등 지원 대상에 도시가스요금 포함(구자근의원안)

구자근의원안은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도시가스요금을 포함하려는 것임.⁷⁾

현행	구자근의원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의 지원) ①·② (생략)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 ----- ----- ----- -----. ----- ----- ----- -----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u>전기요금</u>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6. ----- ----- ----- ----- --- <u>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u> ---

현 행	구자근의원안
7. ~ 9. (생 략) ④ ~ ⑦ (생 략)	----- 7. ~ 9.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66조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피해 유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⁸⁾

개정안은 이 중 제8호에서 간접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금, 보험료 등 공공요금의 종류에 도시가스요금을 명시함으로써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감면 또는 납부유예 등 지원 조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현행법은 재난 피해 시 간접지원 대상을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해당 조문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7) 구자근의원안은 가스사업자가 공급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재난지역의 피해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도시가스 요금 감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41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임.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생 략)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따라 유사 항목의 감면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이 가능하고, 「도시가스사업법」, 「특별재난지역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 및 「천연가스 공급규정」(한국가스공사)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택피해 유형별(전파, 반파, 침수)로 도시가스요금 정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⁹⁾ 개정안의 취지가 이미 반영되고 있어 개정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도 관계 법령·지침에 따라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원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입법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9) 지원대상 및 내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주택피해자에 대하여 주택피해 유형별 1개월분 도시가스요금 정액 차등 지원

구분	전파	반파	침수
취사용 사용가구	1,680원		
취사·난방용 사용가구	12,400원	6,200원	

자료: 행정안전부

5. 재난 예보·경보·통지 시 반려동물 동반 관련 대피장소 정보 제공 (한정애의원안)

한정애의원안은 재난의 예보·경보·통지를 통한 대피권고 또는 대피명령을 하는 경우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하는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한정애의원안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 ⑥ (생략)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설>	⑦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통하여 대피권고 또는 대피명령을 하는 경우 대피장소(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장소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⑧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시·군·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시·도종합계	⑨ -----제8항에----- ----- ----- ----- ----- ----- ----- -----

현행	한정애의원안
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⑨·⑩ (생략) ⑪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항과 제8항을 준용한다. ⑫ (생략)	-----. ⑩·⑪ (현행 제9항 및 제10항과 같음) ⑫ ----- ----- ----- -제8항과 제9항을-----. ⑬ (현행 제12항과 같음)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자·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문자·음성송신이나 방송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⁰⁾

개정안은 재난문자나 방송 등을 통한 예보·경보·통지 시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하는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재난 상황으로부터 신속한 대피와 반려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동물 보호를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재난문자나 방송 등을 통한 예보·경보·통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지역별 대피장소와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전시·사변이나 재난 피해와 관련하여 비상대피시설, 임시주거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 「민방위기본법」 및 「재해구호법」에 반려동물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대피장소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개정안은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¹¹⁾

한편,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 등을 통한 예보·경보·통지 시 국민이 어느 위치에서 수신 또는 인지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특정 대피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반려동물 동반 대피장소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재해구호법」 등 관련 법령상 반려동물 동반 대피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1) 관련하여, 구호의 종류에 반려동물 관련 재난 구호 지원을 명시(이은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2563호)하거나 구호 대상에 반려동물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4193호)하려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비상대피시설에 반려동물 동반 시설을 포함(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4187호)하려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음.

6. 집행계획 등의 추진실적 제출 등(최기상의원안)

최기상의원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집행계획, 세부집행계획 및 시·도안전관리계획의 작성 주기를 명시하고, 작성 주체가 전년도 추진 실적을 소관별로 제출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분석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현 행	최기상의원안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국가</u> 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 <u>5년마다</u> <u>국가</u> <u>의</u>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u>5년</u> <u>마</u> <u>다</u> <u>그</u> ----- ----- ----- -----.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23조(집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제23조(집행계획) ① ----- ----- -----

현행	최기상의원안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생략)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u>세부집행계획</u>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부 등 지방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u>매년 그</u>-----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매년</u> <u>세부집행계획</u>----- ----- ----- -----. ----- ----- -----. 제24조(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 ----- ----- <u>따라 매년 시</u>----- ----- ----- -----. ② ----- ----- -----

현행	최기상의원안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④ (생략) 제25조(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에 <u>따라</u> 시·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u>그</u>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u><신설></u>	<u>매년 그</u>-----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 ----- -----<u>따라 매년 시</u>----- ----- ----- ----- ----- -----. ② ----- ----- ----- ----- -----<u>매년 그</u>----- ----- ----- -----. ③·④ (현행과 같음) <u>제25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u>

현행	최기상의원안
	<u>리책임기관의 장(시·도 또는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외한다)은 제23조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세부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③ <u>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군·구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④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포함한다)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⑤ <u>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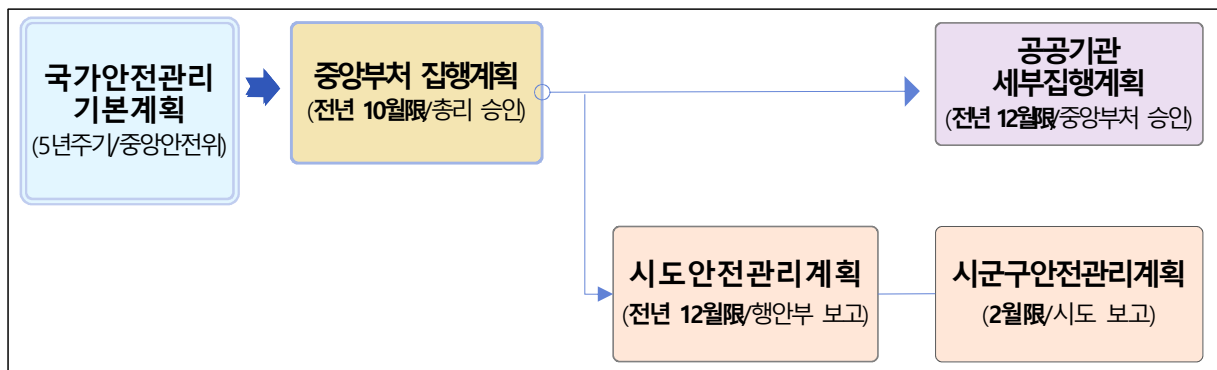
현행	최기상의원안
	<u>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⑥ 시·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도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포함한다)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항·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생략)	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현행 제25조의2와 같음)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① ----- ----- ----- ----- -----.

현행	최기상의원안
1. (생략) 2.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3.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4. (생략) ② ~ ⑥ (생략)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제3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실적 3. ~ 5. (생략) ②·③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의4제1항제1호에----- ----- ----- 3. 제25조의4제4항에-----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의4제1항에----- -----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국무총리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통보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이를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¹²⁾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 한 후 이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하는 등¹³⁾ 기본계획-집행계획-세부집행계획-시·도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단계별 수립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체계]



자료: 행정안전부

-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집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부 등 지방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¹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수립지침의 작성 주기(5년)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집행계획, 세부집행계획,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경우 매년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확정된 계획의 추진실적을 단계별로 제출하도록 집행점검 및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안전관리계획의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한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입법 조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의 추진실적 제출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①현행법상 세부추진계획 작성 시 승인권자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므로 그 추진실적 점검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도록 함이 효율적이고 (안 제25조의2제2항 관련), ②종합 분석 보고서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주체이자 집행계획 등의 승인 주체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므로(안 제25조의2제7항 관련), 집행실적 점검 주체 및 세부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349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①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5년마다 작성해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